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 본 공통운영기준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시도별 편차 완화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참고로 시·도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는 숙려제를 운영하여야 함

I 학업중단 숙려제란?

1. 추진 근거	2
2. 목적	2
3. 내용	3
4. 참여 대상	3
5. 단계별 추진 체계	4

I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 운영 주체	6
2. 숙려기간 및 횟수	6
3. 운영 방법	7
4. 출결 및 성적	10
5. 학생 안전관리	10
6. 운영 결과 등록	11
7. 타 시·도교육청 기관 연계	12
8.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12
9. 기타 고려사항	13

II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연계

1. 목표	16
2. 내용	16
3. 운영 기관	16
4. 외부기관 연계 시 유의사항	17

부록

1. 학업중단 숙려제 Q & A	20
2. 학교급별 행정 절차의 예시	25
3.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나이스(NEIS) 학업중단 관련 기능 안내	27
4.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비교	30

서식

1. 학업중단 숙려제 (미)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예시)	4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를 위한 안내 서식	43

I

학업중단 숙려제란?

1. 추진 근거	2
2. 목적	2
3. 내용	3
4. 참여 대상	3
5. 단계별 추진 체계	4

I 학업중단 숙려제란?

1.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1항, 제7항 내지 제9항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목적

- 💡 학업중단 위기 징후 학생 조기 발견을 통한 학업중단 사전 예방
-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 및 상담 등 숙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학업중단 예방
- 💡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최소화

3. 내용

- 💡 학교(Wee클래스 등), 교육(지원)청(Wee센터 등), 교육청 지정 학업중단 숙려제 위탁 기관의 숙려 프로그램* 및 상담을 통한 학생 위기 원인 맞춤형 지원

* 상담·치유, 학습지도, 진로 개발, 문화체험, 예·체능 활동, 부모-자녀 관계 개선 등

4. 참여 대상

💡 참여 대상

-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유의사항

※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야 함

💡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그 밖에 시도교육청에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5. 단계별 추진 체계

💡 사전 예방

- 학교 내 대안교실, 사제동행 꿈키움 멘토링, Wee클래스, Wee센터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 사전 예방

💡 준비 단계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 학교 차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 마련
-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참여 대상 학생·학부모 상담 및 안내

💡 운영 단계

- 숙려기간 및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외부기관 연계
- 학생 안전관리

💡 마무리 단계

- 학교 적응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 연계 강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 운영 주체	6
2. 숙려기간 및 횟수	6
3. 운영 방법	7
4. 출결 및 성적	10
5. 학생 안전관리	10
6. 운영 결과 등록	11
7. 타 시·도교육청 기관 연계	12
8.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12
9. 기타 고려사항	1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1. 운영 주체

💡 학교장

2. 숙려기간 및 횟수

💡 숙려기간: 최소 2주 ~ 최대 7주까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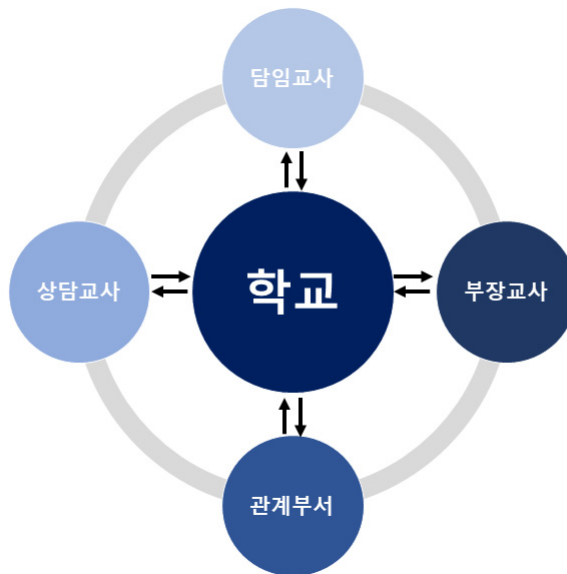
- 시·도교육청 및 학생·학교의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 숙려횟수: 당해학년도의 숙려제는 원칙적으로 최대 2회까지 참여 가능

- 지역의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3. 운영 방법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



[그림 1]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구성의 예시

- 학년 초 단위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절차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 학교의 규모 및 교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함
 - 팀 형태로 운영 가능하며, 학교 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단위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학교 규칙에 반영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방식 및 절차에는 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기준 포함

💡 숙려제 안내

-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는 반드시 대상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함
- 학생은 숙려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숙려제 참여 신청

-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서식 1 참조, p.40) 내부 계획에 따라 운영
- 학교는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통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되, 숙려제 참여 여부 결정 전에 학생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협의로 운영 기관, 프로그램, 진행 방식, 참여 기간 등 계획 수립

💡 숙려제 실시

- 학생 개인의 학업중단 위기 원인에 따라 학업중단 숙려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참여학생의 희망, 학업중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려 프로그램 제공
- 학교장은 학생의 소재·안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철저히 관리

💡 숙려제 종료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하는 경우, 학생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 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주기적 상담 실시, 필요에 따라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안내
- 숙려기간 종료 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 유형에 따라 적시에 맞춤형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구(서식 2 참조, p. 43-44)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유관 기관 안내, 정보 연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복교, 검정고시), 문화·예술·체육활동,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25. 222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참고사항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함
-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운영 중인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학교 밖 학습경험 등을 통해 초·중 단계의 학교 밖 학력 취득 가능

※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educerti.or.kr)

4. 출결 및 성적

💡 출결 관리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은 시·도교육청별 출석 인정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가능
 - 단, 숙려기간동안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단위로 '출석인정결석' 처리
- 숙려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학교에 복귀 가능
 - 복귀 시 출석 처리를 위해 학교장 결재 필요

유의사항

※ 출결 관련하여 내실 있는 숙려제 운영을 위해 주 2회 이상 학생 상담 권장하며, 편법·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성적 처리

- 각 시·도교육청별 관련 근거(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등)에 따라 처리
- 지필평가 기간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양
 - 부득이 학생의 개인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성적은 관련 근거에 따라 처리

5. 학생 안전관리

💡 학교장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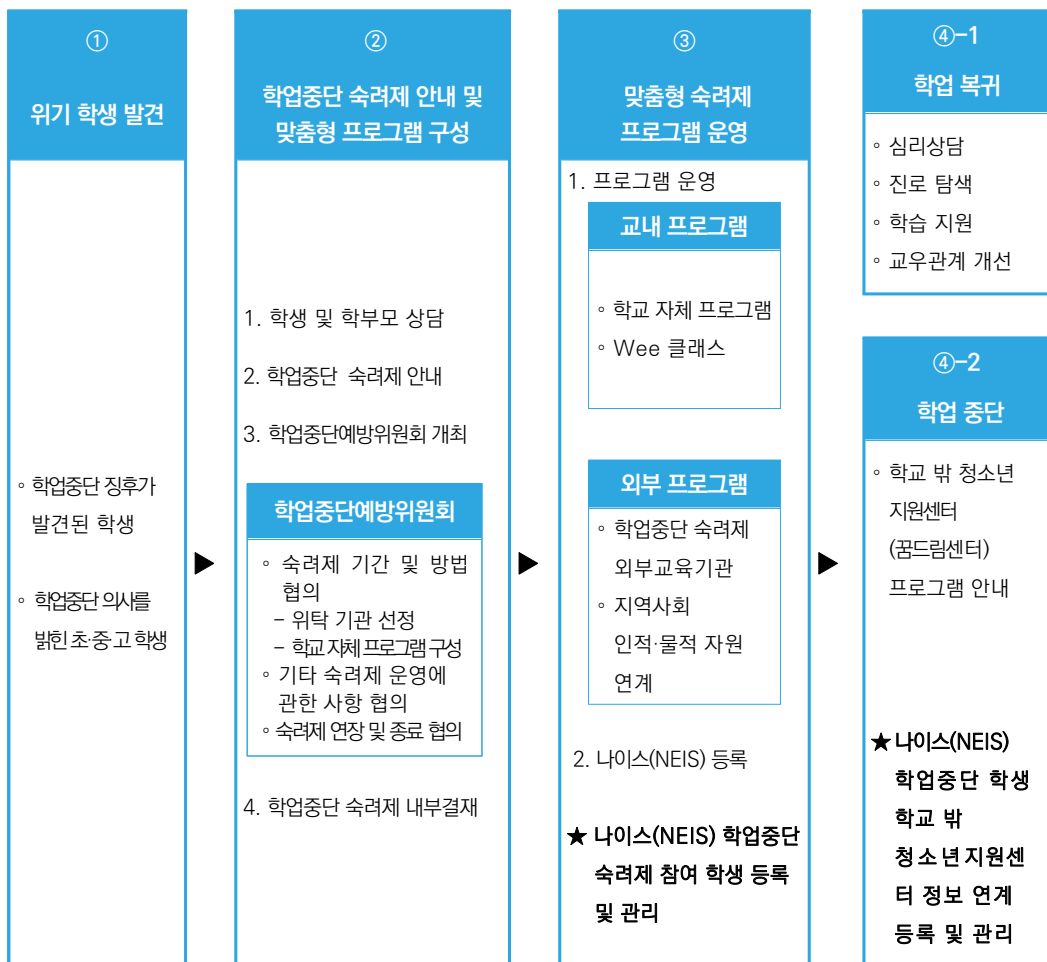
- (숙려제 참여 전) 학교장은 학생, 보호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프로그램 담당자 등 연락망을 사전에 숙지해야 함
- (숙려 기간 중) 학교장은 학생 소재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자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생 상황을 점검해야 함
- 학교 외 기관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하는 경우에도 학교 자체에서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6. 운영 결과 등록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결과 기록

💡 나이스(NEIS) 시스템에 등록

- 학교의 나이스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권한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아 참여 학생에 대한 사항을 등록
- 등록 방법: 나이스 [학업중단-숙려제대상학생관리-숙려제대상학생관리] 메뉴에서 등록 버튼 클릭 → 학생찾기 → 숙려제 학생 정보 등록 → 저장 (부록 3 참조, p.26)



[그림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절차 예시

7. 타 시·도교육청 기관 연계

💡 타 시·도교육청의 기관과 연계 가능

- 학생의 희망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에서 숙려제 참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교육청은 검토 후 수용 여부 판단
- 이 경우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은 원소속 교육청의 기준 우선 적용

8. 비대면 학업중단 숙려제

💡 학업중단 숙려제는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운영 가능

- 학생의 건강, 심리·정서 등 개별 상황 및 감염병 확산 심각 단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프로그램 실시가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경우 숙려 프로그램 일부 혹은 전체에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 가능
- 전화·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 및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
- 학교에서는 비대면 숙려제 참여 학생에 대하여 철저한 출결 관리를 통해 부정 사용방지
-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의 소재 및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
-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외부기관의 여건에 따라 ① 실시간 쌍방향, ② 콘텐츠 활용 중심, ③ 과제 중심 프로그램 등 운영 가능

〈표 1〉 비대면 프로그램의 예시

영역	프로그램 내용
상담·치유	•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및 심리 검사
학습	• EBS 온라인 수업,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이트 활용 • 학업 관련 유튜브 시청 후 피드백
진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 진로·직업 관련 영상 시청 후 피드백 • 온라인 멘토 상담
체험	•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유의사항

※ 상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화상담 보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상담 적극 활용

9. 기타 고려사항

💡 시·도 교육청은 학업중단 숙려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I. 학업중단 숙려제란?

I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II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연계

부록

서식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연계

1. 목표	16
2. 내용	16
3. 운영 기관	16
4. 외부기관 연계 시 유의사항	17

III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연계

1. 목표

- 💡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위기 원인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제공
- 💡 학업중단 숙려제 종료 후 학업 복귀 및 학교생활 적응 향상 지원

2. 내용

- 💡 학교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주체, 외부기관은 운영 협조 기관임
- 💡 학생 상담 및 관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등을 활용한 학업중단 위기 징후 포착 및 지원 방안 강구
- 💡 외부기관으로 학생이 연계되는 경우, 학교 자체 계획에 따라 학생 안전 및 출결 등 확인
- 💡 외부기관과 협력할 경우, 학생 관련 사항에 대한 기관 간 협력 및 소통 유지

3. 운영 기관

- 💡 학교(Wee클래스)
- 💡 교육청(Wee센터) 및 Wee센터와 협약을 맺은 기관
-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 대안교육 관련 기관(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
 - 상담기관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의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업 및 사업장 등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여부, 학생 안전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외부 기관 진행 시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 보고서 제출 가능 기관으로 선정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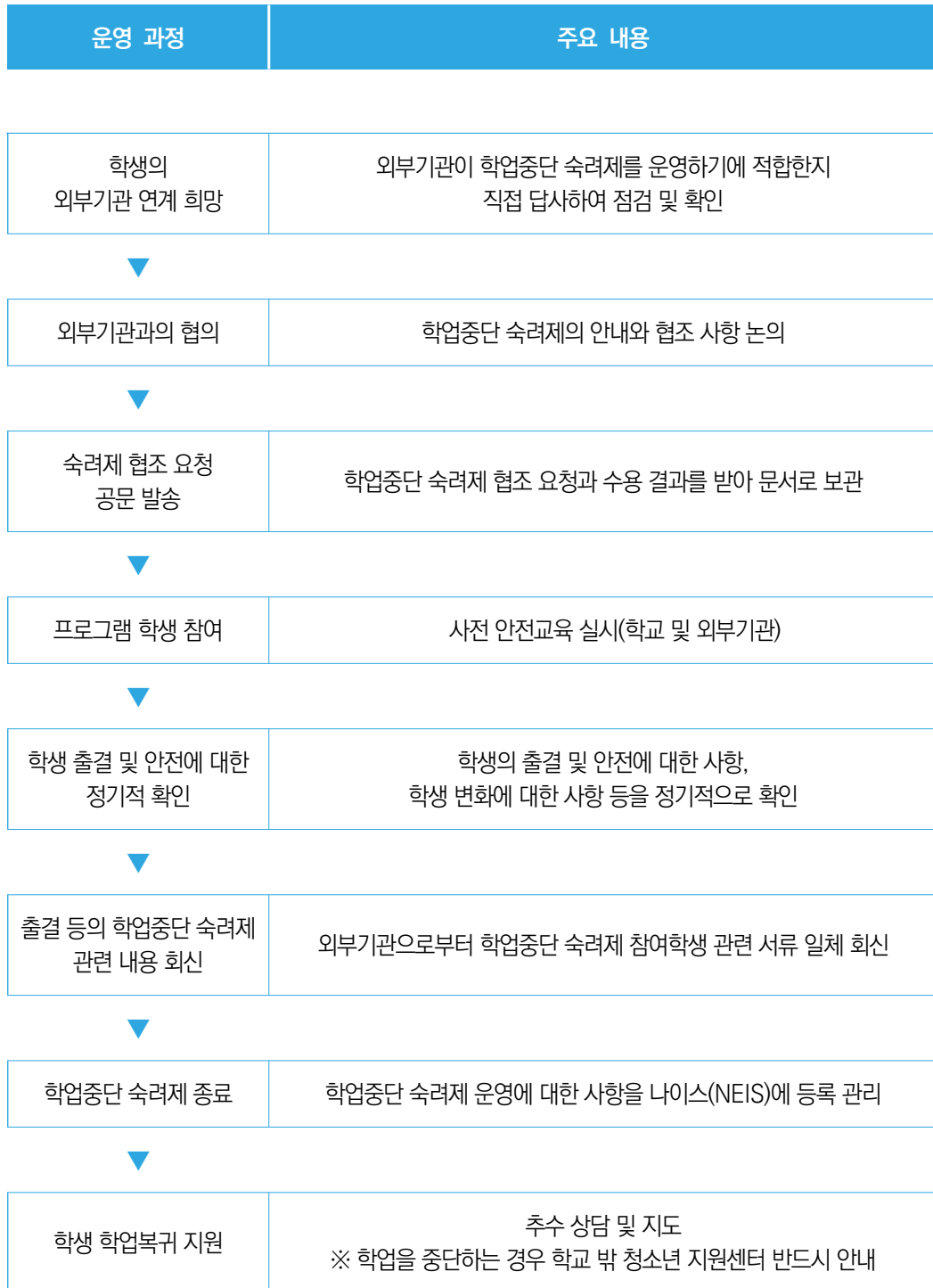
- ※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려제 외부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 ※ 숙려제 외부기관은 시도교육청에서 우선 지정하되, 지역에 따라 외부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인정하는 인근 외부기관 지정이 가능하다.

〈표 2〉 위기 원인별 운영 기관 예시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기관
심리·정신	숙려 상담	학교, Wee클래스,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가정·경제	복지 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 학력 증진	학교, 교육지원청 등
	진로 상담	학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진로 체험	학교, 진로체험지원센터, 대학교, 기업, 개인사업장 등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관계 회복	Wee클래스, Wee센터 등
기타	문화·예체능 활동	학교, 문화·체육시설, 지역 공공기관 등
	캠프, 여행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4. 외부기관 연계 시 유의사항

- 💡 숙려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사전 확인 후 공문 시행
- 💡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 처리
- 💡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할 경우, 사전 답사 및 담당자 면담을 하며, 지속적인 관리 및 연락 유지
- 💡 숙려 기간 중 학생 소재(출결 등) 및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 숙려 기간 동안 학생 지원 등에 대한 학교와 외부기관 간 상호 약속 준수



[그림 3] 외부 기관 연계 운영 예시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부 록

1. 학업중단 숙려제 Q & A	20
2. 학교급별 행정 절차의 예시	25
3.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나이스(NEIS) 학업중단 관련 기능 안내	27
4.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비교	30

부록

1. 학업중단 숙려제 Q & A

1. 학업중단 숙려제의 이해

1-1

학업중단 숙려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학업중단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후회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으로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2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 💡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는 숙려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관련

2-1

초등학생도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되나요?

- 💡 초등학생도 7일 이상 연속 결석을 하거나 누적 30일 이상의 결석을 할 경우, 또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이 됩니다.

2-2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관찰, 면담 등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를 안내해도 되나요?

- 💡 교사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면 학업중단 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등의 과정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라고 학생에게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학생을 발견하면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3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하였으나 학생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검정고시 사유로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라도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학생이 숙려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식1의 숙려제 안내에는 '예'에 체크하고, 참여 여부에는 '아니오'에 체크하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처리합니다.
- 💡 해당 서식은 자퇴원과 함께 학교장 결재를 통해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학생에게 검정고시 이후 일정 등을 안내해 줍니다.

2-4

학업중단 숙려제 제외 대상 학생에게도 숙려제를 안내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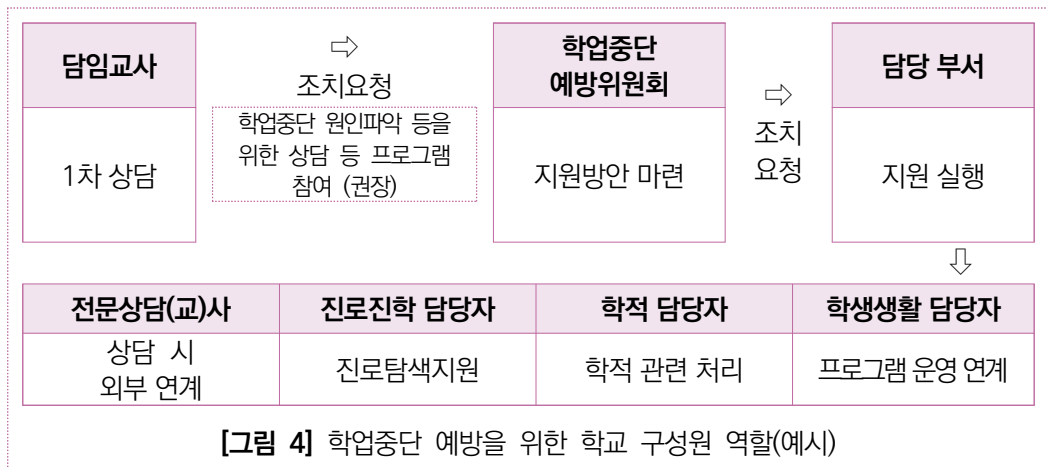
- 💡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의 경우,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질병 및 해외 출국 등)를 제출하므로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 안내하고 미신청서를 받아 학교에 보관하면 됩니다.
- 💡 다만,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합니다.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단,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는 해당 학생·법정대리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서를 받고 제공 가능)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 관련

3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는 학교 내의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교장, 교감 및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 5~10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업무를 협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 💡 아울러, 학교 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업중단 예방 지원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예시)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4-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보호자에게 안내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입니다.
- 💡 그러므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의 대화법, 자녀 지도 방법,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되는 상황 등을 안내하고, 대화를 통해 자녀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안내합니다.
- 💡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숙려제의 목적 및 절차, 학생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 및 참여 방법, 숙려 기간 중 학생의 안전관리, 상시연락체제 유지 등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를 함께 안내하고 학업중단 이후 복교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학생 지원 기관, 학교 밖 청소년센터 등 유관 기관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4-2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나요?

- 💡 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 중심 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학생마다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학생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개인에 맞는 일정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숙려제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4-3

타시도 학생이 우리 시도의 학업중단 숙려제 유관 기관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기관의 상담 일정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합니다.

4-4

한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1학년 때 7주를 사용했는데 2학년 때에도 숙려제를 참여할 수 있나요?

-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년도 단위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1학년 때 7주를 사용하였더라도 2학년 때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 2주 이상 7주 이하 범위에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4-5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한 경우

- 학교에 다시 다니면서 학생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자퇴(유예, 장기결석)하기로 한 경우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학업중단 학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 나이스에 등록하여 정보를 연계합니다.

4-6

전입생이 이전에 숙려제를 참여한 경우, 숙려제에 재참여할 수 있나요?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년도 최대 7주간 참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입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희망할 경우 해당 연도에 7주 이내로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전입생의 직전 학교에 문의하여 학생의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록을 확인하고, 총 7주 이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기 바랍니다.

5.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기관 연계

5-1

학업중단 숙려제 외부기관 운영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기 전에 외부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꿈드림에서 실시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 💡 학생이 외부기관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그 사유를 학교 담당자가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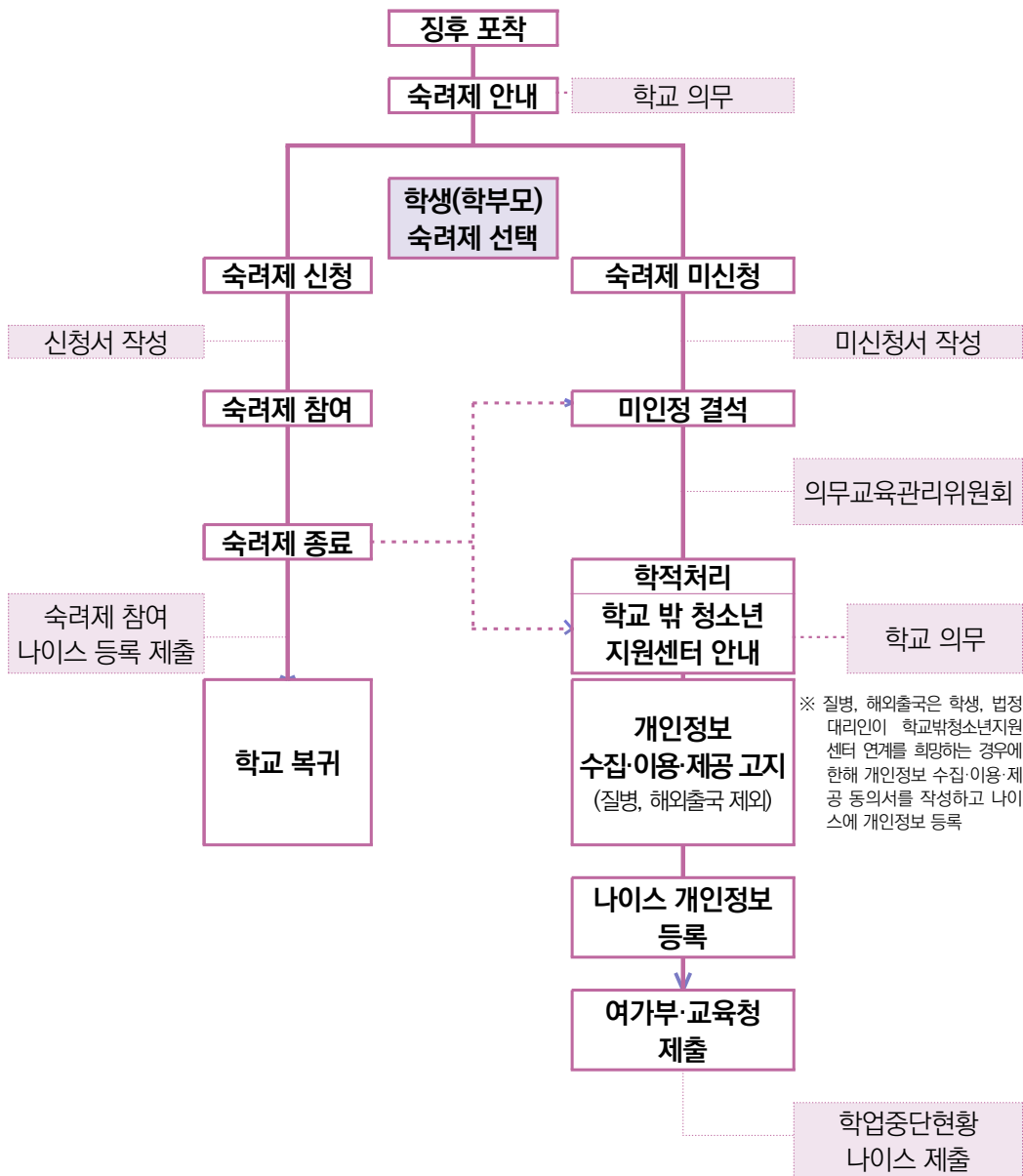
5-2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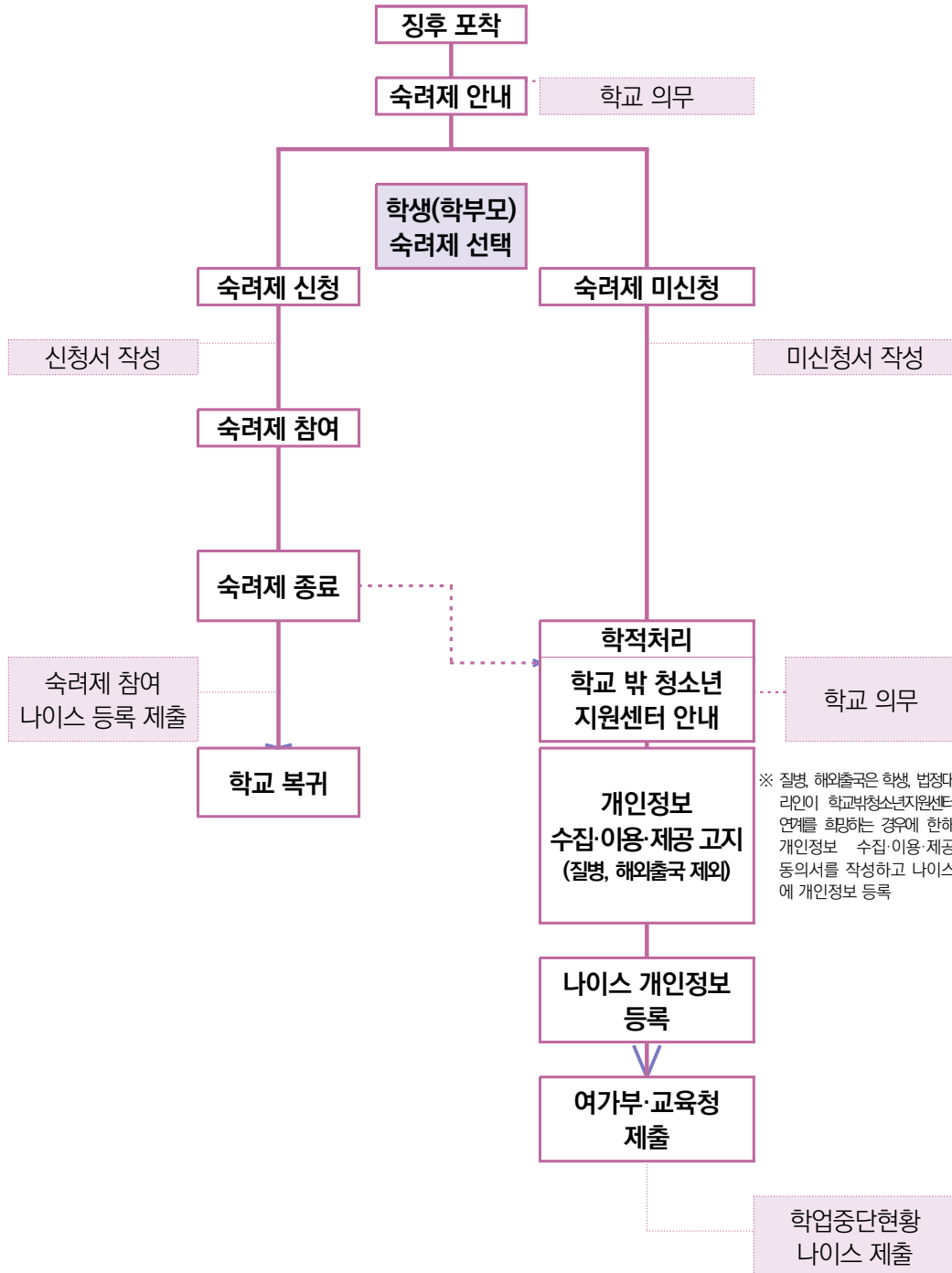
💡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기관이란, 지역 내 학교 밖 기관 등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곳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모두 가능합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미술이나 체육을 체험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이러한 시설이나 학원 등을 외부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학교급별 행정 절차의 예시

1. 초·중학교 행정 절차의 예시(의무교육단계)



2. 고등학교 행정 절차의 예시



3.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나이스(NEIS) 학업중단 관련 기능 안내

대상	순	내용	처리 업무
단위학교	1	권한 부여받기	- 업무담당자: 나이스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권한 담당자)로부터 권한 부여받기 - 나이스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권한 담당자): [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 메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부서관리(부서장지정)]에서 부서명, 부서장, 단위업무(학업중단) 등록 [업무관리(부서원 편성)]에서 해당 부서의 업무, 업무별 담당자 등록 [업무관리(메뉴, 자료권한 관리)]에서 메뉴별로 세부 권한(메뉴등록, 관리권한(등록/수정/삭제 권한)) 설정 - 권한을 부여받고 나면 나이스 학업중단 관련 메뉴가 나타남
	2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 등록	[학업중단]-[숙려제대상학생관리]-[숙려제대상학생관리] 대상 학생 발생 시 나이스에 입력하고 숙려제 기간이 종료되면 학업지속 여부에 체크하기
	3	학업중단 숙려제 집계현황 관리 (집계 및 제출관리)	[학업중단]-[숙려제대상학생관리]-[숙려제집계현황관리] - 연 1회 공문에 의거하여 실시 - 집계 기준일자 설정→집계→저장→승인요청→완결 후 제출 - 대상자수≥참여자수 ※ 숙려제 참여 학생이 없는 학교도 "0"값 입력하여 제출

대상	순	내용	처리 업무
교육지원청	1	권한 부여받기	• 나이스(NEIS)업무담당자로부터 권한 부여받기
	2	학업중단 숙려제 집계현황 관리 (제출관리)	[학업중단]-[숙려제집계현황관리]-[숙려제집계현황관리] • 연 1회 실시 • 마감기준일 설정-조회-승인요청-완결 후 교육청 제출 • 대상자수 ≥ 참여자수 ※ 관내 모든 학교의 자료가 접수되었는지 확인
	3	숙려제 집계현황 조회	[학업중단]-[통계관리]-[숙려제집계현황통계] • [교육지원청접수기준통계] 탭: 마감기준일 설정→조회→숙려제집계현황 확인 • [교육청집계기준통계] 탭: 집계기준일 설정→조회→숙려제집계현황 확인
교육청	1	권한 부여받기	• 나이스(NEIS)업무담당자로부터 권한 부여받기
	2	학업중단 숙려제 집계현황 관리 (접수관리)	[학업중단]-[숙려제집계현황관리]-[숙려제집계현황관리] • 마감기준일을 설정→{조회} 버튼 클릭하면→학교별 숙려제집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체크박스를 선택→{접수} 버튼 클릭하면→학교에서 제출한 숙려제집계현황을 접수할 수 있음
	3	집계 및 제출관리	[학업중단]-[통계집계및제출관리]-[숙려제집계현황통계] • 학년도, 집계마감기준일 설정→ {집계} 버튼 클릭→ 해당 마감기준일로 숙려제집계현황통계 집계됨 • 학년도, 조회마감기준일 설정→ {조회} 버튼 클릭→ 해당 마감기준일로 집계된 숙려제집계현황통계 확인→승인요청→완결 후 교육부 제출

※ 학업중단 사용자매뉴얼(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참고

나이스광장 사용자지원서비스(help.neis.go.kr) > 자료광장 > 사용자설명서에 탑재되어 있음

① 나이스광장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에 접속

② 자료광장 > 사용자설명서 클릭

③ 업무구분 '학교행정', 제목 '학업중단' 입력 → ②조회 → ③조회된 내용에서 '학업중단
사용자 매뉴얼' 클릭

※ 나이스(NEIS) 관련 온라인 질의 방법

업무포털 메인화면 상단-나이스지원-나이스광장 사용자지원시스템(help.neis.go.kr)

-질의광장-질의등록

44

44

[그림 6] (나이스-교육지원청) 숙려제집계현황관리 화면 예시

부록

4.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속려제 운영기준비교

	속려기간	속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공동운영기준 (교육부)	2~7주 (교육청 및 학교, 학생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원칙 (지역 상황에 따라 참여 횟수 조정할 수 있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유예, 해외출국 등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시도교육청별 출석인정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위기관별 운영기관 예시 (학교부적응: 학교 내 대안 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서울	2~7주	학기별 1회 (학년도 기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 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 함을 고려하여 적용)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유예, 해외출국 등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생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 - 속려제 기간 중 상담불참 시 불 참일은 미인정결석 처리, 속려 제 기간 전체 상담 불참 시 속려 제 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 속려제 최소상담 횟수 (1-3 주차) 주1회 이상 상담 (4-7 주차) 주2회 이상 상담 - 속려기간 중 지필고사 결석한 경우, 프로그램 참여하더라도 지필평가 불참일은 미인정 결 석처리	학교 내 대안교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 소년 지원센터, 교육지원 청 Wee센터, 학생교육원 나래숲캠프(중등 위기학 급 대상)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부산	1~7주	숙려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음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함을 고려하여 적용)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 연간 누적 10일 이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1주, 2회, 4시간 이상 이수 시, 주 단위 출석인정 (프로그램 일부 참여 시 불참일은 미인정결석 처리, 전체 불참시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심리·정신: 학교, 병원, 전문상담기관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전문상담기관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대구	1~7주	학기별 3회 (연간 6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유예, 해외출국 등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 (프로그램 불참일은 미인정결석 처리)	Wee클래스, 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인천	2~7주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교장 결정으로 최대 3회 가능)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것.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함을 고려하여 적용)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유예, 해외출국 등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숙려제 계획에 근거하여, 주 1~2회 숙려제 참여 시 출석 인정 (프로그램 일부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프로그램 전체 불참 시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학교 내 대안교실, Wee센터,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광주	2~7주 (한 학기당 4주 이내, ※ 단, 상담·치유 이외의 프로그램 운영 시 또는 동일기관에 재의뢰하는 경우 1주 운영 가능)	별도내용 없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 연 간 누적 2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 거나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 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 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 시자격을 제한함을 고려하여 적용)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 수 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주2회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프로그램 일부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프로그램 전 체 불참 시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 결석 처리)	단위학교(Wee클래스, 학 교내대안교실), Wee센 터, Wee스쿨 (용연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문화의 집, 수련관 등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대전	2~7주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3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된 학생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 학습),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의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자퇴(고), 유예(초,중)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은 무지개이음 대상이 되며, 무지개이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다시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음 (※ 검정고시 응시 자격: - 고졸: 공고일까지 학업이 중단되어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초졸·중졸: 공고일 이전 정원 외 관리자인 경우 - 공고일 전 당해 연도 초등 및 중학교 졸업자는 당해연도 1회차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 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생 -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생	주 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 인정 (주2회 미만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교육기관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울산	1~7주 (회당 2주 ~ 4주 권장)	학기별 1회 (학년도 기준 2회)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합산 10일 이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1) 숙려 후 학업 지속 시 -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2) 숙려 후 학업 중단 시 - 상담·프로그램 참여일만 출석인정	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이룸센터 등
세종	2~7주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1) 학교 자체 운영 시 - 주2회(일) 이상 운영하며,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 2) 외부기관 위탁 시 - 주3회(일) 이상 운영하며, 모두 참여 시 출석인정 ※ 학교별로 출석 인정 규정 제정	학교 내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정신건강센터, 숙려제 프로그램 외부기관(전문상담, 직업체험 등)
경기	1~7주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1) 숙려상담기간 (1~2주차/ 최대 2주) - 주2회 상담 참여 시 전체 출석 인정 (주1회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 인정결석 처리) 2) 매일프로그램 운영기간 (3~7주차/ 최대 5주) - 일 1회 이상 참여 시, 출석인정	심리·정신: Wee클래스, Wee센터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학습종합클리닉 학교 부적응: 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강원	2~7주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재판중이거나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생 - 수시 합격 또는 수능 이후 고등 학교 3학년생	주2일 이상 이수 시, 주 단위 출석 인정 (주1회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 인정)	심리·정신: 학교, 전문상담 기관, 병원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학습종합 클리닉 학교 부적응: 학교 내 대안 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대안교육 시설 등
충북	2~7주 (회당 2주 ~ 4주 운영,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 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 함을 고려하여 적용)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그 밖에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상담·프로그램 모두 참여 시, 숙려 기간 전체 출석인정 (프로그램 일부 참여 시 불참일은 미인정결석 처리)	학교 내 프로그램, Wee센 터, 지역별 대안교육 프로 그램 운영기관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충남	2~7주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20일 이상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 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는 응시자격을 제한 함을 고려하여 적용)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연락두절, 행방불명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생, 수시 합격 또 는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 생 (※ 단, 위기 정도가 심한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 의 후 가능) - 그 밖에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판단한 학생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 인정 (주1회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	Wee클래스, 학교 내 대안 교실, Wee센터,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 년지원센터, 대안교육 위 탁교육기관
전북	1~7주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2회 초과 시 교내 학업중단예방 위원회에서 횟수조정 가능)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중학교-공고일 전일까지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고등학교 -자퇴 후 공고일 기준 6개월이 경 과해야 검정고시 응시 가능함을 고려)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재판중이거나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 학생 - 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후 중학교 3학년생 - 수시 합격 또는 수능 이후 고등 학교 3학년생	1) 상담 -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주1회 이하 참여 시, 해당 주 미 인정 결석 처리) 2) 프로그램 -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상담으로 대신한 경우 상담 1회 를 프로그램 1회로 처리)	심리-정신: Wee클래스, Wee센터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진로센터 등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위 탁교육기관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전남	2~7주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4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그 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숙려 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 인정 (프로그램 일부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심리·정신: 학교, Wee클 래스, Wee센터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교 부적응: Wee클래스, Wee센터 등
경북	2~7주 (상황에 따라 1주 운영 가능)	학년도 기준 최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주2회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 인정 (주1회 참여 시, 참여일만 출석인정)	Wee클래스, Wee센터 등

	숙려기간	숙려횟수	참여대상	제외학생	출석일수 인정범위 (출석인정처리 결석 처리 기준)	운영기관 (프로그램)
경남	2~7주 (회당 2주 ~ 4주 운영, ※ 단, 「학업중단에 방위원회」 판단에 따라 7주 기간 내 기간 연장 또는 재부여 가능)	학기별 1회 (학년도 기준 2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 고시 응시를 위하여 학업중단 의 사를 밝힌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 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을 경과하 지 아니하여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음)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미 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그 밖에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 서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 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프로그램 참여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출석인정 (기준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프로그 램에 참여한 날만 인정결석 처리) ※ 상담프로그램 1주 3회 참여 기준	심리·정신: 학교, 병원, 전 문상담기관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학습종합 클리닉센터 등 학교 부적응: 학교 내 대안 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등
제주	2~7주	학년도 기준 최대 3회	학업중단징후 발견학생 - 학업중단 징후 진단(판단) -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 간 누적 30일 이상 학업중단의사 밝힌 학생 -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 퇴원을 제출한 학생 - 검정고시 응시 등의 사유로 중 단 의사를 밝힌 학생	- 연락두절, 행방불명 - 질병치료, 사고, 미인정유학 등 학업 중단 - 학교폭력, 학교규칙으로 인한 미인정결석, 퇴학 - 그 밖에 시도교육청에서 숙려 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1) 상담프로그램 - 주2회(1회 1시간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2)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주3시간 이상) 및 상담(1시간 이상) 참여 시, 주 단위 출석인정 (일부·전체 불참 시 주 단위로 미 인정결석 처리)	심리·정신: Wee클래스, Wee센터 등 가정·경제: 학교, 청소년상 담복지센터 등 학업·진로: 학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학교생활 부적응: 행복교 실(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서 식

1. 학업중단 숙려제 (미)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예시) 42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를 위한 안내 서식 4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안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법정의무사항)

학교	→ (학업중단 학생 정보제공·연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은 소속 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연계해야 합니다.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등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청소년의 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청소년 법정대리인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5년 •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종료되거나, 본인 등 정보제공 동의 주체가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확인

청소년 성명	청소년 생년월일	청소년 성별
청소년 주소	청소년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정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의 성명 • 청소년의 생년월일 • 청소년의 성별 • 청소년의 주소 • 청소년의 연락처 •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	• 보유·이용기간 : 6개월 • 파기 방법 : 개인정보 제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및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제37조에 따라 파기

※ 아래 동의서식은 질병 또는 출국 사유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작성(해당없을 시 작성불요)

☐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질병 또는 출국 사유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연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방법을 안내받았으며,

- (청소년)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위 안내서에 작성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부동의), 제3자 제공에 (☐동의, ☐부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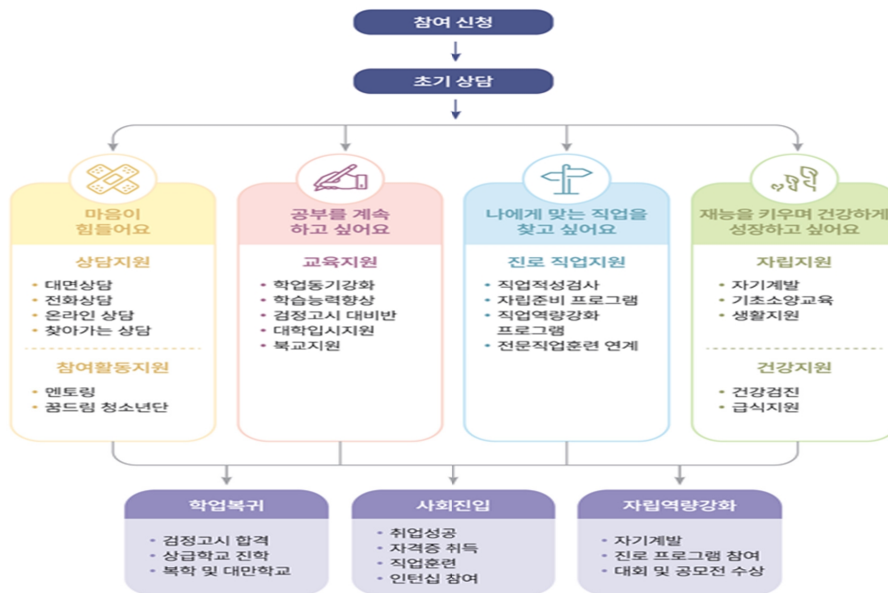
▶ **지원대상** :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1)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지원프로그램** : 상담지원 / 교육지원 / 진로·직업지원 / 자립지원 / 건강지원 등

▶ **이용방법**

- www.kdream.or.kr 에서 가까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은 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 또는 청소년 상담 ☎지역번호+1388로 전화 문의



출처 : www.kdream.or.kr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꿈이음 사업) >

▶ **지원대상**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 정원의 학적관리 되는 사람

- 초등학교 단계 : 7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 중학교 단계 : 13세가 되는 해의 6월 1일 이후 ~ 24세 이하

▶ **학습지원 프로그램**

- 온라인 : (초등학교) 꿈이음 EBS 온라인 프로그램 / (중학교) 방송통신중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 오프라인 : 학교 밖의 다양한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평생학습계좌제, 친구랑 등)에서 운영하는 교과 / 문화체험 / 예체능 / 직업체험 프로그램 중 교육청에서 지정한 프로그램

※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www.educerti.or.kr에서 확인 가능

▶ **학력인정** : 초·중학교별 기준 시수 이상 이수 시 졸업학력 인정

▶ **이용방법 및 학력인정 세부사항 안내** : www.educerti.or.kr / 043-530-9160, 9716 / educerti@kedi.kr

■ 개발진

협력관

하진혜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과장
김민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서기관
김경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연구사

연구진

김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센터장
이진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인 쇄 2025년 1월 31일

발 행 2024년 1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